

자동차보험 사업방법서_별지

2026. 03

개인용자동차보험

1. 보험의 종류 : 자동차보험

2. 보험종목의 명칭 : 개인용자동차보험

3. 보험 가입대상

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
단,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
교습, 도로주행 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

4. 보험목적에 관한 사항

가. 자동차

나.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
에 관한 피보험이익

다. 자동차에 관련하여 생기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관한 피보험이익

5.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

가. 통신판매를 통한 직접 판매(TM)

6. 보험기간, 보험료납입기간 및 보험료납입주기

가.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기간 : 1년만기

나. 보험료납입주기 : 일시납

7. 배당에 관한 사항

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8. 보험료 차등 적용에 관한 사항

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9. 특약에 관한 사항

보통약관에 첨부할 특약은 다음과 같다.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용카드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| | |
|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| | |
|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|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|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|
|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| 기명피보험자 및 지명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|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|
|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| 주말·휴일 확대보상 특별약관 | |
| 렌트비용 지원 특별약관 | 신차가액보상 담보(6개월) 특별약관 |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|
|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| 신차가액보상 확장 담보(12개월) 특별약관 | 차량기준가액 확대보상 특별약관 |
|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| 긴급출동서비스 확장(50km) 특별약관 | (전기차 전용)긴급출동서비스 확장(150km) 특별약관 |
| 긴급출동서비스 실속형 추가 특별약관 | 긴급출동서비스 확장(50km) 실속형 추가 특별약관 | (전기차 전용)긴급출동서비스 확장(150km) 실속형 추가 특별약관 |
|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| 다른 자동차 부모운전담보 추가 특별약관 | 다른 자동차 자녀운전담보 특별약관 |
|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약 |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손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| |
|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|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|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|
|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|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| |
| 나눔(서민우대) 특별약관 | 마일리지(선할인) 특별약관 | 마일리지(후할인) 특별약관 |
|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| 차량용 영상기록장치(블랙박스) 특별약관 |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손해 특별약관 |
| 자녀 피해 보상 특별약관 |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| 자녀 할인 특별약관 |
|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|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|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별 |

| 특별약관 | | 약관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| 자동비상 제동장치 할인 특별약관 |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|
| 전기자동차 충전 중 위험 보장 특별약관 | 전기자동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 |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|
| 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| 카카오내비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|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 |
|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별약관 | 헤드업 디스플레이 할인 특별약관 | |

10. 기타 사항

- 가.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할인·할증적용등급(률)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를 추징하거나 환급함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나. 자기차량손해담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일부보험으로 인수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의 60%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.
- 다. 기존 계약을 효력상실, 해지, 중복시키고 동 계약보다 개별할인·할증의 적용등급이 낮은 다른 계약과 동일증권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다.
- 라.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관련 제출서류는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보험의 인수심사, 보험금 심사 혹은 요율산출 등 다른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는다.